

■ 최신 법령 ■

[자본시장]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이행규 변호사 | 채희석 변호사 | 주성훈 변호사

최근 금융관련법령에는 주요한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반면 정부는 2013년 12월 4일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앞으로 일반 사모펀드를 비롯하여 헤지펀드와 PEF 관련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모펀드제도의 변화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국내 사모펀드 시장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 (현행)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되어 있고,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
- (개선)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2.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 최소투자한도를 일정금액(현재는 5억원 예상)으로 설정하여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를 제한

3.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대폭 완화

- 진입 :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현재는 PEF를 제외하고 집합투자업 인가제)
- 설립 :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14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 운용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
- 판매 : 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조사의무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

4. 기타

-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계열회사 투자제한을 강화

5. 다운로드 :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